【 7 】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7. 9. 25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양주군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직제와 부합되게 정리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토지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함.

(안 제8조 제2항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(간사및서기) 제2항중 "토지관리계장"을 "부동산관리계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간사및서기) ① (생 략)	제8조(간사및서기) ①(현행과 같음)
②간사는 토지관리계장이 되고,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	②----------부동산관리계장----------
③ (생 략)	③(현행과 같음)

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

[1994. 10. 26 조례 제1513호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주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,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
2. 판사, 검사,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3.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
4.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4조(위원의 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(의사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이 되고,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9조(조사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,

또는 군 관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록) 간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.

1.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3. 의결내용
4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1조(수당등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(1994.10.26 조례 제151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